

<별표 4> <개정 2005.2.4, 2005. 12. 29, 2006.12.22, 2008.1.23, 2008.2.11, 2008.2.27, 2010.12.29, 2012.4.5, 2013.10.10, 2015.6.8, 2018.4.4., 2018.10.25. 2021.12.15., 2022.6.27.>

계량지표의 산정기준

1. 자본적정성

가. 조정자기자본비율 = $\frac{\text{조정자기자본}}{\text{조정총자산}} \times 100$

- 조정자기자본 = 기본자본 + 보완자본(기본자본 범위내) - 공제항목
 - 기본자본 : 납입자본금 + 자본잉여금 + 자본조정 + 기타포괄손익누계액 + 이익잉여금 <개정 2008.1.23>
 -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, 아래 항목은 차감한다.<신설 2010. 12. 29>
 - 1) 대출채권 등(대출채권, 금융리스채권, 금융리스선급금 및 여신성 가지급금, 이하 같다) 및 금융부채의 누적 미실현평가손익 (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차감)
 - 2) 대손준비금 (이익잉여금항목에서 차감)
 - 3) 대출채권 등 및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 (이익잉여금항목에서 차감)
 - 4)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재평가이익 (세후 기준)으로서 이사회, 주주총회의 결의, 정관의 변경 등에 의해 배당이 제한되지 아니한 금액 (이익잉여금항목에서 차감)
 -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, 아래 항목은 차감한다.<신설 2010. 12. 29>
 - 1) 상환우선주 발행자금 (기본자본에서 차감)
 - 2) 임대목적 보유 유형자산의 누적재평가잉여금(재평가로 증가한 감가상각비 누적액 차감 후 기준)(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차감)
 - 보완자본 : 별표4-1 보완자본의 인정요건과 같음<개정 2015.6.8.>
- 조정총자산
 - : 총자산 - (현금+담보약정이 없는 단기성 예금+만기 3개월이내의 국공채) - 공제항목 + **부외항목**<개정 2022.6.27.>
 - 총자산은 대차대조표 기준으로 하되,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「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」에 의해 유동화된 자산중 자산교체의무, 신용보강 등 실질적 신용위험이 있는 자산의 100분의 10 (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50)을 포함한다. <개정 2005.2.4, 2005.12.29, 2006.12.22, 2008.2.11>
 -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조정총자산에서 대손준비금 및 대출채권 등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을 각각 공제한다.<신설 2010.12.29>
 -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조정총자산에서 임대목적 보유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(감가상각누계액 차감 기준)을 공제한다.<신설 2010.12.29.>

- 여신전문금융회사(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제외)의 경우 감독규정 제11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대상 미사용약정, 지급보증,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은 부외항목으로 간주한다. 이때,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는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신용환산율을 적용한다.<신설 2022.6.27.>

- 공제항목 : 이연법인세자산 + 창업비 + 개발비 + 환율조정차(외화환산차)[고객전가가능분 제외]+ 영업권(임차보증금에 포함된 권리금 포함)+ 선포인트 선급비용 <개정 2001.12.19, 2008.1.23, 2012.4.5>

나. 단순자기자본비율 = $\frac{\text{자기자본}}{\text{총자산}} \times 100$

- 자기자본 : 납입자본금 + 자본잉여금 + 자본조정 + 기타포괄손익누계액 + 이익잉여금 <개정 2008.1.23>

-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, 아래 항목은 차감한다.<신설 2010.12.29>

- 1) 대출채권 등 및 금융부채의 누적 미실현평가손익 (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차감)
- 2) 대손준비금 (이익잉여금항목에서 차감)
- 3) 대출채권 등 및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 (이익잉여금항목에서 차감)
- 4)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재평가 이익(세후 기준)으로서 이사회, 주주총회의 결의, 정관의 변경 등에 의해 배당이 제한되지 아니한 금액 (이익잉여금항목에서 차감)

-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, 아래 항목은 차감한다.<신설 2010.12.29>

- 1) 상환우선주 발행자금 (기본자본에서 차감)
- 2) 임대목적 보유 유형자산의 누적재평가잉여금(재평가로 증가한 감가상각비 누적액 차감 후 기준)(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차감)

- 총자산 : 대차대조표상 총자산

-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조정총자산에서 대손준비금 및 대출채권등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을 각각 공제한다. <신설 2010.12.29>

-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조정총자산에서 임대목적 보유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(감가상각누계액 차감 기준)을 공제한다. <신설 2010.12.29>

2. 자산건전성 <개정 2005.2.4>

가. 손실위험도가중부실채권비율 = $\frac{\text{가중부실채권등}}{\text{총채권등}} \times 100$

- 가중부실채권등

: 총채권 등의 자산건전성분류에 따른 고정 분류채권의 20%, 회수의문 분류채권의 75% (카드자산의 경우 60%), 추정손실 분류채권의 100%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 <개정 2003.1.24>

- 총채권등 :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에서 유가증권, 투자 및 현금서비스한도 및 미수이자를 제외한 금액 <개정 2003.1.24, 2010.12.29>

나.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비율 = $\frac{\text{대주주신용공여액}}{\text{자기자본}} \times 100$ <개정2008.2.27>

○ <삭제 2005.12.29>

○ 대주주신용공여액 :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<개정2005.12.29, 2008.2.27>

- <신설 2003.6.30> <삭제 2005.12.29>
- <삭제 2005.12.29>
- <삭제 2005.12.29>
- <삭제 2005.12.29>
- <삭제 2005.12.29>
- <삭제 2005.12.29>
- <삭제 2005.12.29>
- <삭제 2005.12.29>
- <삭제 2005.12.29>
- <삭제 2005.12.29>
- <삭제 2005.12.29>

○ 자기자본 : 위 "1.나"(자본적정성-단순자기자본비율)에서의 자기자본 <개정 2008.1.23, 2010. 12. 29>

다. 고정이하채권비율 = $\frac{\text{고정이하분류채권등}}{\text{총채권등}} \times 100$

○ 고정이하분류채권등

: 총채권 등의 자산건전성분류에 따라 고정, 회수의문, 추정손실로 분류된 금액 <개정 2003.1.24>

○ 총채권등

: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에서 유가증권, 투자, 미사용약정 및 미수이자를 제외한 금액 <개정 2003.1.24, 2007.2.11., 2010.12.29., 2022.6.27.>

라. 연체채권비율 = $\frac{\text{연체채권(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)}}{\text{총채권등(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)}} \times 100$

○ 연체채권

: 총채권 등에서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 등을 말하며 약정기일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채권 및 분할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을 포함한다. <개정 2003.1.24>

- 신용카드업자의 연체채권비율 산정시 1개월미만 연체 자산은 제외하되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을 정상화할 목적으로 채권의 만기, 금리 등 조건을 변경하여 당해 채무자에게 다시 자금을 융통하여 발생한 채권(이하 '대환대출 채권' 이라 한다)은 미연체 또는 1개월미만 연체채권이라 하더라도 연체채권에 포함한다. 다만, 대환대출 취급시점 총채무액의 30% 이상 납입되거나 대환대출채권의 원리금이 약정대출기간의 1/3(또는 6개월) 이상의 기간 동안 약정납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연체없이 납입되는 등 상환능력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채권은 제외할 수 있다. <개정 2003.6.30, 2004.6.16>
- 채권의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기준은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. <신설

2003.1.24 >

○ 총채권등

: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에서 유가증권, 투자, 미사용약정, 지급보증,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 및 미수이자를 제외한 금액 <개정 2003.1.24, 2008.2.11., 2010.12.29., 2021.12.15., 2022.6.27.>

-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은 대차대조표 기준으로 하되, 신용카드업자의 경우에는 「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」에 의해 유동화된 자산(「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시행세칙」에 의해 대손상각된 채권은 제외)을 포함한다. <신설 2003.6.30>

마. 대손충당금적립비율 = $\frac{\text{대손충당금 잔액(대손준비금 포함)}}{\text{대손충당금 최소의무적립액}} \times 100$ <신설 2005.2.4, 2010.12.29>

○ 대손충당금 최소의무적립액

: 감독규정 제11조에서 정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의한 최소의무적립액 <개정 2018.10.25>

3. 수익성

가. 총자산순이익율 = $\frac{\text{당기순이익}}{\text{총자산(평잔)}} \times 100$

○ 당기순이익 : 결산 및 가결산시 법인세차감후 당기순이익

-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전입액, 대출채권등 및 금융부채의 평가손익은 차감한다. <신설 2010.12.29>

-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당기순이익에서 임대목적 보유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증가한 감가상각비를 가산한다. <신설 2010.12.29>

○ 총자산(평잔) : 대차대조표상 총자산(평잔)

-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에서 대손준비금과 대출채권 등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잔액을 공제한다. <신설 2010.12.29>

-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에서 임대목적 보유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(감가상각누계액 차감 기준)을 공제한다. <신설 2010.12.29>

나. 총자산경비율 = $\frac{\text{총경비}}{\text{총자산(평잔)}} \times 100$

○ 총경비 : 인건비, 경비, 제상각 및 제세공과의 합계액

○ 총자산(평잔) : 위 "3.가"(수익성-총자산순이익률)에서의 총자산(평잔) <개정 2010.12.29>

다. 수지비율 = $\frac{\text{세전비용}}{\text{세전수익}} \times 100$ <개정 2010.12.29>

○ 세전비용 : 손익계산서상의 비용합계에서 법인세를 제외한 금액 <개정 2010.12.29>

-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세전비용에서 대손준비금전입액을 가산하고 대출채권 등 및 금융부채의 미실현평가손실은 제외한다.
-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세전비용에서 임대목적 보유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증가한 감가상각비는 제외한다.

○ 세전수익 : 손익계산서상의 수익합계 <개정 2010.12.29>

-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세전수익에서 대손준비금환입액을 가산하고 대출채권 등 및 금융부채의 미실현평가이익은 제외한다.

라. 마케팅비용 지출비율 = $\frac{\text{마케팅비용}}{\text{신용판매수익}} \times 100$ <신설 2013.10.10>

○ 마케팅비용

: 부가서비스비용(포인트, 마일리지, 할인서비스 등 카드상품에 내재된 부가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) 및 관측비용(무이자할부비용, 행사 실시 관련 비용, 경품 등 지급비용, DM발송 등 고객관리비용 등 부가서비스 이외에 신용카드등의 매출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)의 합계

- 모집비용, 광고선전비용은 제외한다

○ 신용판매수익

: 가맹점수수료 및 할부카드 수수료, 일시불대금금에 대한 연체수수료의 합계

4. 유동성

가. 유동성자산비율 = $\frac{\text{유동성자산}}{\text{유동성부채}} \times 100$

○ 유동성자산 : 90일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원화유동성자산.

- 증거금·담보 등으로 제공되어 있어 90일 이내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은 제외한다.
- 신용카드업자의 경우 1개월 이상 연체채권은 제외한다. <개정 2005.2.4., 2021.12.15.>

○ 유동성부채 : 90일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원화유동성부채

- 90일 이내에 원화의 유출입이 수반되는 파생거래(스왑거래중 미결제 통화선도계약분, 통화선도계분)는 원화유동성자산 또는 원화유동성부채에 포함한다. <개정 2021.12.15.>

나. 즉시가용유동성비율 = $\frac{\text{즉시가용유동성자산}}{\text{1개월 이내 만기도래 부채}} \times 100$ <개정 2008.1.23., 2021.12.15.>

○ 즉시가용유동성자산 : 현금, 예치금, 즉시매도가능유가증권 및 미인출약정한도의 합계

- 예치금 및 즉시매도가능유가증권이 증거금, 담보 등으로 제공되어 있어 1개월 이내 현금화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.
- 미인출약정한도는 계약상 취소불가능한 구속력 있는 약정 또는 조건부로 취소가능한 약정에 한하며, 약정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이 차주 신용상태의 중대한 변화라는 전제조건없이 무조건적으로 취소가능한 약정은 제외한다.

○ 1개월 이내 만기도래 부채 : 30일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부채

다. 단기조달비중 = $\frac{\text{단기조달잔액}}{\text{총조달잔액}} \times 100$ <개정 2021.12.15.>

○ 단기조달잔액 : 총조달잔액 중 자금조달 당시 만기가 1년 이내인 조달 잔액의 합계

○ 총조달잔액 : 차입금, 회사채, 자산유동화 등을 통한 자금조달 잔액의 합계

라. 발행채권의 신용스프레드 <신설 2005.2.4., 개정 2021.12.15.>

○ 신용스프레드

: 신용카드채의 수익률과 동일 만기 국고채 수익률과의 차이